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5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황주홍 · 이양수 · 윤준호

김성찬 · 오영훈 · 박주현

경대수 · 손혜원 · 김태흠

박완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을 “현장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 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 터 소비까지 <u>현장에서 필요로</u> <u>하는</u>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 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 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 요 조사) ① ----- ----- -----<u>현장에 필요한</u> ----- ----- -----.</p> <p>② (현행과 같음)</p>